

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

의안 번호	17934
----------	-------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4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건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장애인권리보장법안	2201542	김예지	2024. 7. 9.	2024. 11. 14.
장애인권리보장법안	2203162	최보운	2024. 8. 23.	2024. 11. 14.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2205220	서미화	2024. 11. 4.	2025. 1. 14.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2203163	최보운	2024. 8. 23.	2024. 11. 14.

나.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 8. 20.),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6. 2. 27.)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함.

다.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6. 3. 13.)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6. 3. 13.) 비용추계 생략
의결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장애 관련 법령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으나, 장애를 의료적 모델 중심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남아 권리 기반의 종합적 정책 수립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2000년 이후 다수의 장애 관련 법률이 제정·개정되었으나 법률 간 연계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권리 중심의 국제적 흐름과 장애등급제 폐지,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전반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며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과 사회의 문화적·물리적·제도적 장벽 등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에 제약이 발생하는 상태로 정의하여, 상호작용 기반의 인권·사회 관점을 도입함(안 제3조).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하여 법제·재정적 조치, 사회적·제도적 장벽 개선, 차별 방지 및 권리옹호·구제 체계 구축, 자기결정에 기반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라. 장애인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안 제8조).
- 마.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로서 존엄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참정권 및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 바.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권리, 직업선택권, 안전권, 건강권, 재활을 받을 권리, 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탈시설화 등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 사. 이동 및 접근권, 지식 및 정보접근권, 문화향유 및 예술활동에 관한 권리, 체육활동에 관한 권리, 관광·여행 및 여가활동에 관한 권리, 사법접근권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 아. 5년 단위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장애인정책위원회

로 변경하는 등 장애인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함(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자. 3년 주기의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통계 수집·관리, 장애영향평가 근거 마련 등 정책 기반을 강화함(안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차.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명칭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하고 수행 업무를 확대·개편함(안 제38조).

카. 장애아동, 장애노인, 장애여성, 중증·중복·소수유형 장애인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홍보영상 및 디지털 기술 활용 등 권리 실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타. 새로운 제도의 개발, 관련 단체의 보호·육성,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하여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차별과 배제 없이 권리를 존중받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정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으로서

제2호에 따른 장애인과 관련된 제반 정책을 말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필요한 장애인정책을 수립·실시하고, 법제(法制)·재정과 관련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연령, 성별 특성 및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욕구에 적합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권리 구제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 따른 장애인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행의 관점에서 장애인 정책과 계획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 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③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실현은 방해받지 아니하며, 모든 국민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의 날) ①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장려 및 권리증진을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주간에 제1항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실시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제7조(국제협력) ① 국가는 장애인과 관련된 국제조약의 체결 또는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장애인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국제적 평화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장애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장애인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인의 권리보장

제9조(존엄권) ①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신체적, 정신적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유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평등권) 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요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이 모든 유형의 차별에 대하여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자기결정권) ① 장애인은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하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배제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참정권) ①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권리와 공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고 공적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접근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편의시설·설비를 설치하고 수어통역·안내 보조, 선거용 보조기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직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거나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장애인은 장애인정책의 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4조(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권리) ① 장애인은 기초적인 생계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이 적절한 수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소득보장,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그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직업선택권) ① 장애인은 직업을 선택하고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의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적성과 능력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

유할 수 있다.

제16조(안전권) ① 장애인은 신체의 자유 및 생명과 안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이하 이 조에서 “학대등”이라 한다)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등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학대등의 예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포함한 비상재해·재난 등에 대비하여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장애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건강권) ① 장애인은 최적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 향상 및 의료접근성 보장 등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재활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장애인은 신체·정신·사회 및 직업능력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절한 훈련 및 재활서비스

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건, 고용, 교육, 체육 및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종합적인 훈련과 재활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자립생활 권리 보장을 위한 탈시설화 등) ①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해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제한하는 환경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탈시설화 등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 및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교육권) ① 장애인은 장애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능력·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모든 교육기관은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修學) 등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맞추어 시설의 정비 및 자료의 제공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이동 및 접근권) ①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 개선과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동 및 시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기기 지원 및 인적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동편의시설 확대와 인식개선을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한국수어 통역, 안내 보조, 전기통신, 방송시설 등 인적·물적 제공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디자인의 연구, 개발, 확산 및 이용촉진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지식 및 정보 접근권) ① 장애인은 자신에게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문자·자막서비스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 및 문자·자막서비스와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와 민간 행사 주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을 포함한 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고,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 양성·과견, 장애인 및 복지 지원 제공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문화향유 및 예술활동에 관한 권리) ① 장애인은 문화향유 및 예술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화관, 전시관, 극장, 박물관과 전시 및 공연 등의 행사에 장애인의 관람·참여·향유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예술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체육활동에 관한 권리) ① 장애인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자유롭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활동의 활성화와 참여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지원, 운동경기 지원, 체육동호인조직 육성,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개발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 및 활용,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에 장애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제25조(관광·여행 및 여가활동에 관한 권리) ① 장애인은 관광·여행 및 여가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 및 흥미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놀이기구·온라인프로그램·기타 장비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이용 또는 접근 가능하도록 수련

시설, 체험시설, 자연학습시설, 휴양시설, 여가교육시설, 여가학습장 등을 개선하거나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사법 접근권) ①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 조사, 증인 참여를 비롯한 모든 사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장애인이 사법 조사, 증인 참여를 비롯하여 필요한 사법적 절차에서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연령과 장애 유형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장애인정책 추진체계

제27조(장애인정책종합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장애인 관련 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장애인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3. 장애인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
4. 장애인정책의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5. 장애인 권리보장의 실태 및 개선과제
6. 장애인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자원 규모와 조달 및 운용방안
7. 장애인정책 전달체계의 구성과 역할

8. 그 밖에 장애인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연도별 시행계획과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종합계획 수립 시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평가 등을 확정할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연도별 시행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관련 업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시행

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장애인정책위원회) ①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주요 장애인 정책을 수립·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정책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5. 교육, 고용, 문화, 체육, 이동 및 접근성, 자립지원 등 장애인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정책의 평가 및 점검, 개선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정책 전달체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장애인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정책의 개발·연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장애인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장애인정책책임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이하 “정책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정책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 ①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장애인정책전달체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역적·

기능적으로 균형 잡힌 장애인 정책 전달체계(이하 “장애인정책전달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정책전달체계의 효과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장애인정책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정책전달체계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장애인정책 대상별·기능별 전달체계 간의 통합 가능성

2. 장애인정책전달체계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

3. 장애인정책전달체계에 있어 공공과 민간의 협력 및 연계

4. 그 밖에 효과적인 장애인정책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3조(종사자 양성 및 교육·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 권리보장 및 사회통합 증진을 위하여 전문자격 제도를 운영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제34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권리보장의 실태를 평가하고 장애인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대상·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통계의 구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통계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수집에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수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 제3항에 따른 지표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장애영향평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 관

런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7조(장애인정책 연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 수행 등을 위탁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정책의 종합적인 수행과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보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보장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단위에 지원을 둘 수 있다.

④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지원
2.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장애인정책 정보의 수집·분석·관리·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3. 통계 및 지표의 구축 및 관리 지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및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지원
 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지원
 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지원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 지침 개발·보급 등 장애인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사업
 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9. 장애인 권리보장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장애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의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 및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관련 법률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10.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제도·정책·서비스 등의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지원
 11.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 개발 및 협력사업 지원
 1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

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보장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장애인의 권리 실현

제39조(예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 원인과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고·산업재해·약물중독 및 환경오염 등에 의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0조(장애아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을 위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장애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 건강, 문화, 여가, 체육활동 등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을 성폭력, 가정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1조(장애노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노인의 권리 증진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노인이 소득, 돌봄, 건강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고, 문화, 여가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2조(장애여성) ① 장애여성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게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장애여성의 모성보호와 보육 여건 향상, 건강유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학습, 직업교육, 장애여성에게 적합한 노동환경 조성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학대 등으로부터 장애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3조(출산·양육 등의 보장) 장애인은 임신·출산·양육 및 가사 등에 대한 모든 결정에 있어서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제44조(중증·중복·소수유형 장애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지원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가 두 종류

이상인 장애인이 욕구에 적합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생빈도가 낮은 소수 유형의 장애인이 배제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장애를 포괄하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5조(정보의 공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제46조(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설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권리나 의무를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7조(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상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제48조(사회적 인식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고취하며,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및 유해한 관행을 근절하는 데 필요한 교육, 공익광고 등 홍보 및 그 밖의 인식제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매체의 장애인 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장애인 평등의식이 확산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9조(홍보영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12호의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전광판으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제3항에 따른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0조(디지털 기술의 활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편의 증진 등을 위한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고 장애인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디지털 기술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디지털 교육·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관련 디지털 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51조(새로운 제도의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권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2조(단체의 보호·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및 권리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3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① 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같은 법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

제54조(권한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재활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5조(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보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5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별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이 법에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수립·시행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및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및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위원은 각각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 및 장애인정책실무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으로 본다.

제4조(장애인정책책임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정책책임관으로 지정된 사람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한국장애인개발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본다.

②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은 설립등기일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그 권리·의무 및 재산에 관한 등기부 및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명의를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의 명의로 본다.

③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로부터 기산한다.

④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 법 시행 후 1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관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실시 중인 장애실태조사는 제34조에 따라 실시 중인 실태조사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52조”로 한다.

②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9조의 장애인정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로 한다

③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로 한다.

④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52조”로 한다.

제74조의2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12조제1항”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로 한다

⑥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7조”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로 한다.

제12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로 한다.

⑦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로 한다.

⑧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로 한다

제4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로 한다.

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7조”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 실태조사”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8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13조제2항”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1조제2항”으로 한다.

⑪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52조”로 한다.

⑫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52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로 한

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제3조를 제외하고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